#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상품의 특이사항

#### Q:「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재해장해의 위험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개시 이후에 생존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케어연금(생존연금과 동일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거치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아래의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액에 추가로 적 립합니다.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해당금액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0.3%%
다만,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	· 
발생일 전에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유지보너	스 해당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Q:「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무엇인가요?

A :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형의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합니다.

거치형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자동인출금액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Q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 은 적립액의 인출이 가능한가요?

- A: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있다.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Q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라 함은 거치형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정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정한 주기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회사에 소정의 서류 를 제출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 신청시 계약자는 지급기간, 지급주기, 자동인출금액, 지급시작 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 Q:「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보 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납 이상(다만, 전기납 제외)	5년
전기납	신청불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총 36개월 이내 월단위로 신청하며, 1회 신청기간 한도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최대 5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해당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위험보험료 등)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중단되고 보험계약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Q:「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 보험계 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Q:「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제도가 있나요?

A: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매월 기본보험료가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할인하여 영수하는 방법(할인형) 또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는 방법(가산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립형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매월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1.8%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8,000원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부분의 1.9%)		
500만원 초과	56,000원 +(기본보험료 중 500만원 초과부분의 2.0%)		

#### Q:「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Ⅱ. 보험가입 자격요건

## 1. 보험종류

- 연금보험
- 개인형
- 적립형/거치형

##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45세 ~ 90세			
			종신연금(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ᄲᅐᅄᄀ	100세((100세-Y세)년) 보증형,		
Q	연금지급형태	생존연금	110세((110세-Y세)년) 보증형,		
			기대여명보증형)		
		케어연금	종신연금		
니하기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일시납	20세 ~ (Y-3)세 (최대 85세)			
	3년납	20세 ~ (Y-5)세 (최대 85세) 20세 ~ (Y-8)세 (최대 82세)			
가입나이	5년납				
	7년납		20세 ~ (Y-9)세 (최대 81세)		
	10년납 이상				

##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적립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기간	3/5/7/10년납 이상	일시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 3. 보험료 납입한도

#### 가. 기본보험료

- 적립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5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 거치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1,00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거치형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 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자동인출금액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	(주계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제도성특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주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 <b>적립형</b> ] 기본보험료의 100% × 해당장해지급률
세예정예법적급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거치형] 기본보험료의 10% × 해당장해지급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케어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 -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110세보증, 기대여명보증			
케어연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상 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생존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금액 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출현율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생존연금액의 동일액)			

#### (주)

- ①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② 케어연금은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케어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케어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부터 케어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케어연금은 약관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또는 약관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생존연금 및 케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케어연금도 변경됩니다.
- 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 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

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⑥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110세, 기대여명) 동안 연금개시 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110세, 기대여명)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케어연금은 보증지급기간이 없어 생존시에만 지급되므로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
- ⑦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110세, 기대여명)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110세, 기대여명)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케어연금은 보증지급기간이 없어 피보험자 사망 이후 케어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⑧ 제6항 및 제7항의 기대여명이라 함은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 명표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미만일 경우, 5년으로 합니다.
- ⑨ 생존연금 및 케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⑩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① 100세 보증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보증지급됩니다. 110세 보증을 선택할 경우, (11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보증지급됩니다.
- 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 포함)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단,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 및 적립액 인출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와 사망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가. 일상생활장해상태

- '일상생활장해상태'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이동,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옷입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구체적 내용은 약관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중증치매상태

-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90일 이상 지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이상(다만,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의 진단확정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중증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중증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중증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료기 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III

	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 (개인 연금형)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 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del>종</del> 신 연금	주 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시율을 적용하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생존 연금	(부부 연금형)	종 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 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 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액			
	상속 연금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sup>挊</sup>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료에 대한 1년동안의 이자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전환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연금	확정 연금형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3년~5년, 10년, 15년, 20년			

#### (주)

- 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연금지급개시나이 이전에 발생한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입한 이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②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 ③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3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상속연금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생존연금을 지급합 니다.
- ⑨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⑩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전환일 로부터 10년 이내에는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①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나.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봅니다)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Ⅳ. 보험료 산출기초

#### 1. 적용이율

#### Q: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2. 적용위험률

#### O: 적용위험율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3~100% 재해장해율			
TE	남자	여자		
20세	0.000200	0.000068		
40세	0.000318	0.000126		
60세	0.000556	0.000422		

구분	개인연금	
<u> </u>	남자	여자
50세	0.001130	0.000560
60세	0.001890	0.000660
70세	0.004030	0.001450

<sup>※</sup> 개인연금사망률의 경우 가입나이 40세 기준입니다.

####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4. 적립이율

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서 2021년 1월 현재 적립이율은 2.30%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적립이율도 변경됩니다.

####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 내부지표  $X(1-\alpha)$  + 외부지표  $X\alpha$
- 내부지표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외부지표는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5.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VI.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 Q: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 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

보험은 은행의 서축과는 날리 위험보상과 서축을 겸비한 세노로서 보험계약사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예시

#### □ 적립형

[기준 : 가입나이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단위: 천원)]

	최저보증이율(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적용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보험료(A)	(B)	(B/A)	(C)	(C/A)	보험료(A)	(B)	(B/A)	(C)	(C/A)
3개월	1,500	1,383	92.2%	1,383	92.2%	1,500	1,383	92.2%	1,383	92.2%
6개월	3,000	2,771	92.4%	2,771	92.4%	3,000	2,772	92.4%	2,772	92.4%
9개월	4,500	4,165	92.6%	4,165	92.6%	4,500	4,165	92.6%	4,165	92.6%
1년	6,000	5,564	92.7%	5,564	92.7%	6,000	5,564	92.7%	5,564	92.7%
2년	12,000	11,212	93.4%	11,212	93.4%	12,000	11,213	93.4%	11,213	93.4%
3년	18,000	16,945	94.1%	16,945	94.1%	18,000	16,946	94.1%	16,946	94.1%
4년	24,000	22,764	94.9%	22,764	94.9%	24,000	22,765	94.9%	22,765	94.9%
5년	30,000	28,670	95.6%	28,670	95.6%	30,000	28,671	95.6%	28,671	95.6%
6년	36,000	34,665	96.3%	34,665	96.3%	36,000	34,666	96.3%	34,666	96.3%
7년	42,000	40,750	97.0%	40,750	97.0%	42,000	40,750	97.0%	40,750	97.0%
8년	48,000	47,161	98.3%	47,161	98.3%	48,000	47,162	98.3%	47,162	98.3%
9년	54,000	53,669	99.4%	53,669	99.4%	54,000	53,671	99.4%	53,671	99.4%
10년	60,000	60,275	100.5%	60,275	100.5%	60,000	60,276	100.5%	60,276	100.5%
15년	60,000	63,041	105.1%	63,041	105.1%	60,000	63,042	105.1%	63,042	105.1%
20년	60,000	65,947	109.9%	65,947	109.9%	60,000	65,950	109.9%	65,950	109.9%

[기준: 가입나이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단위: 천원)]

		["   C	187	1 10 11,		30 [2], 00		,,,,,,,,,,,,,,,,,,,,,,,,,,,,,,,,,,,,,,,	20(6)	1 – – – / 3
		Min[ :	명균공시여	기율 2.25°	%,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	30%) ] 조	<del>18</del>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보험료(A)	(B)	(B/A)	(C)	(C/A)	보험료(A)	(B)	(B/A)	(C)	(C/A)
3개월	1,500	1,385	92.3%	1,385	92.3%	1,500	1,385	92.3%	1,385	92.3%
6개월	3,000	2,778	92.6%	2,778	92.6%	3,000	2,778	92.6%	2,778	92.6%
9개월	4,500	4,178	92.8%	4,178	92.8%	4,500	4,178	92.8%	4,178	92.8%
1년	6,000	5,587	93.1%	5,587	93.1%	6,000	5,587	93.1%	5,587	93.1%
2년	12,000	11,299	94.2%	11,299	94.2%	12,000	11,300	94.2%	11,300	94.2%
3년	18,000	17,141	95.2%	17,141	95.2%	18,000	17,141	95.2%	17,141	95.2%
4년	24,000	23,114	96.3%	23,114	96.3%	24,000	23,114	96.3%	23,114	96.3%
5년	30,000	29,221	97.4%	29,221	97.4%	30,000	29,221	97.4%	29,221	97.4%
6년	36,000	35,465	98.5%	35,465	98.5%	36,000	35,466	98.5%	35,466	98.5%
7년	42,000	41,850	99.6%	41,850	99.6%	42,000	41,851	99.6%	41,851	99.6%
8년	48,000	48,616	101.3%	48,616	101.3%	48,000	48,617	101.3%	48,617	101.3%
9년	54,000	55,534	102.8%	55,534	102.8%	54,000	55,535	102.8%	55,535	102.8%
10년	60,000	62,607	104.3%	62,607	104.3%	60,000	62,609	104.3%	62,609	104.3%
15년	60,000	69,656	116.1%	69,656	116.1%	60,000	69,658	116.1%	69,658	116.1%
20년	60,000	77,534	129.2%	77,534	129.2%	60,000	77,536	129.2%	77,536	129.2%

[기준: 가입나이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단위: 천원)]

										1 2 2/3
				2021년 19	실 현재 공	시이율(2.3	0%) 적용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보험료(A)	(B)	(B/A)	(C)	(C/A)	보험료(A)	(B)	(B/A)	(C)	(C/A)
3개월	1,500	1,385	92.3%	1,385	92.3%	1,500	1,385	92.3%	1,385	92.3%
6개월	3,000	2,778	92.6%	2,778	92.6%	3,000	2,778	92.6%	2,778	92.6%
9개월	4,500	4,179	92.9%	4,179	92.9%	4,500	4,179	92.9%	4,179	92.9%
1년	6,000	5,588	93.1%	5,588	93.1%	6,000	5,588	93.1%	5,588	93.1%
2년	12,000	11,305	94.2%	11,305	94.2%	12,000	11,305	94.2%	11,305	94.2%
3년	18,000	17,154	95.3%	17,154	95.3%	18,000	17,154	95.3%	17,154	95.3%
4년	24,000	23,137	96.4%	23,137	96.4%	24,000	23,137	96.4%	23,137	96.4%
5년	30,000	29,258	97.5%	29,258	97.5%	30,000	29,258	97.5%	29,258	97.5%
6년	36,000	35,519	98.7%	35,519	98.7%	36,000	35,520	98.7%	35,520	98.7%
7년	42,000	41,925	99.8%	41,925	99.8%	42,000	41,926	99.8%	41,926	99.8%
8년	48,000	48,715	101.5%	48,715	101.5%	48,000	48,716	101.5%	48,716	101.5%
9년	54,000	55,661	103.1%	55,661	103.1%	54,000	55,662	103.1%	55,662	103.1%
10년	60,000	62,766	104.6%	62,766	104.6%	60,000	62,768	104.6%	62,768	104.6%
15년	60,000	70,005	116.7%	70,005	116.7%	60,000	70,007	116.7%	70,007	116.7%
20년	60,000	78,115	130.2%	78,115	130.2%	60,000	78,117	130.2%	78,117	130.2%

#### (수)

-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은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3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4.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5.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입니다.

- 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7.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거치형

[기준: 가입나이 55세, 기본보험료 5,000만원, 58세 연금개시, 일시납(단위: 천원)]

	_			,				,	_	
		최저보증이율(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적용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	49,353	98.7%	49,353	98.7%	50,000	49,354	98.7%	49,354	98.7%
6개월	50,000	49,364	98.7%	49,364	98.7%	50,000	49,365	98.7%	49,365	98.7%
9개월	50,000	49,375	98.8%	49,375	98.8%	50,000	49,375	98.8%	49,375	98.8%
1년	50,000	49,384	98.8%	49,384	98.8%	50,000	49,385	98.8%	49,385	98.8%
2년	50,000	49,789	99.6%	49,789	99.6%	50,000	49,791	99.6%	49,791	99.6%
3년	50,000	50,472	100.9%	50,472	100.9%	50,000	50,474	100.9%	50,474	100.9%

[기준: 가입나이 55세, 기본보험료 5,000만원, 58세 연금개시, 일시납(단위: 천원)]

	[									
		Min[ <sup>1</sup>	명균공시여	기율 2.25 <sup>9</sup>	%,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	30%) ] 적	<del>설용</del>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	49,446	98.9%	49,446	98.9%	50,000	49,446	98.9%	49,446	98.9%
6개월	50,000	49,549	99.1%	49,549	99.1%	50,000	49,549	99.1%	49,549	99.1%
9개월	50,000	49,650	99.3%	49,650	99.3%	50,000	49,651	99.3%	49,651	99.3%
1년	50,000	49,751	99.5%	49,751	99.5%	50,000	49,752	99.5%	49,752	99.5%
2년	50,000	50,533	101.1%	50,533	101.1%	50,000	50,535	101.1%	50,535	101.1%
3년	50,000	51,605	103.2%	51,605	103.2%	50,000	51,608	103.2%	51,608	103.2%

[기준: 가입나이 55세, 기본보험료 5,000만원, 58세 연금개시, 일시납(단위: 천원)]

									_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30%) 적용									
경과		남자						여자		
기간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실납입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립금	적립률
	보험료(A)	(B)	(B/A)	(C)	(C/A)	보험료(A)	(B)	(B/A)	(C)	(C/A)
3개월	50,000	49,452	98.9%	49,452	98.9%	50,000	49,452	98.9%	49,452	98.9%
6개월	50,000	49,561	99.1%	49,561	99.1%	50,000	49,561	99.1%	49,561	99.1%
9개월	50,000	49,669	99.3%	49,669	99.3%	50,000	49,669	99.3%	49,669	99.3%
1년	50,000	49,776	99.6%	49,776	99.6%	50,000	49,777	99.6%	49,777	99.6%
2년	50,000	50,583	101.2%	50,583	101.2%	50,000	50,585	101.2%	50,585	101.2%
3년	50,000	51,681	103.4%	51,681	103.4%	50,000	51,684	103.4%	51,684	103.4%

#### (주)

-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은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3.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3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4.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5.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입니다.
- 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7.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Ⅶ. 모집수수료율

#### Q: 모집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저축성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로서 보험회사가 상품별 최적사업비 가정에 따라 부가된 사업비 중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가입조건 : 적립형,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 기본보험료 월 50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0.22%	0.21%	0.21%	0.78%	1.41%

[가입조건 : 거치형, 남자 55세, 58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1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 <del>율</del>	1.485%	-	_	_	1.485%

- ※ 1차년도~4차년도 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 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의 비율입니다.
-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Ⅷ.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 [적립형]

##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월 50만원]

1년~7년	8년~10년	11년~20년
8.0030% ~ 8.0030%	4.1030% ~ 4.1030%	1.0040% ~ 1.0040%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월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 분	목 적	시 기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9% (19,500원) 7년 초과 10년 이내: 0.0% (0원)
보험관계비용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4.1% (20,5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1.0% (5,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30% ~ 0.0040% (15원 ~ 20원)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0%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	0%	0%	0%	0%	0%	0%	0%

##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sup>(주)</sup>
적립액 인출 수수료	적립액 인출에 따른 비용	적립액 인출시	 없음

(주)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재납입 할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Min*(추가납입보험료의0.3%, 30,000원)을 부과함

## [거치형]

##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55세, 58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초회	2차월 이후 ~ 15차월 이내	16차월 이후 ~ 3년
1.4304%	0.1154%~0.1154%	0.0354%~0.0354%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계약체결비용	가입시	초회: 기본보험료의 0.53%(265,000원)
		매월	2차월이후 15차월 이내: 0.08% (40,000원)
보험관계비용	계약관리비용	가입시	초회: 기본보험료의 0.90%(450,000원)
포함단계미궁		매월	2차월 이후: 기본보험료의 0.035%(17,5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4% ~ 0.0004% (205원 ~ 205원)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0%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해지공제금액(만원)	0	0	0
해지공제비율	0%	0%	0%

####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7 1 1 10 20 1 1					
구 분	목 적	시 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sup>(주)</sup>		
적립액 인출 수수료	적립액 인출에 따른 비용	적립액 인출시	 없음		

(주)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재납입 할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Min*(추가납입보험료의0.3%, 30,000원)을 부과함